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일자 : 2016.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4길 60
- 개 원 일 : 2001. 4. 28.
- 사 업 비 : 144,400천원(군비 144,400천원)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1~3층), 경량철골구조(4층)
- 시설규모 : 수용인원 131명/지상4층 1,013m²

구 분	교실수	구 성 내 용	비 고
1층	4	어린이도서관, 인터넷부스, 보드 카페, 사무실	
2층	6	멀티미디어실 3개, 다목적 홀, 댄스연습실, 북 카페	
3층	5	동아리실 2개, 프로그램실 2개, 세미나실	
4층	2	밴드연습실, 탁구장	
옥외	3	농구장, 창고, 야외테라스	

나.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현황

- 최초 위탁 : 2001. 04. 28 ~ 2003. 04. 27(2년)
- 1차 갱신계약 : 2003. 04. 28 ~ 2004. 12. 31(1년8개월)
- 2차 갱신계약 : 2005. 01. 01 ~ 2007. 12. 31(3년)
- 3차 갱신계약 : 2008. 01. 01 ~ 2010. 12. 31(3년)
- 4차 갱신계약 : 2011. 01. 01 ~ 2013. 12. 31(3년)
- 5차 갱신계약 : 2014. 01. 01 ~ 2016. 12. 31(3년)

다.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근무인원(상사)	이용인원 (2015년기준)	수입 및 지출현황(천원)		
		수입(A)	지출(B)	증감(A-B)
계 : 5명 - 관 장 :1명 - 팀 장 :1명 - 지도사 :3명 - 사 서 직 :1명	계 : 43,425명 - 프로그램 : 39,247명 - 어린이도서관 : 4,178명	194,223 (운영보조금, 기타보조금, 자체수입)	194,223 -인건비: 120,068 -체제공과금: 10,396 -프로그램운영비: 38,031 -일반운영비: 25,728	0

라. 위탁사무 및 조건

-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마. 위탁기간 : 2017. 1. 1 ~ 2020. 12. 31일까지 4년간

- 위탁기간 만료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 예산지원

- 시설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

3. 참고사항

가. 향후계획

- 공개모집 공고 :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선정 : 11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12월

나. 공개모집 계획 : 따로 붙임

다.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기본법」 제59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계획

2016. 12. 31일자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계획입니다.

□ 위탁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기본법」 제59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명 :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4길 60
- 개원일 : 2001. 4. 28.
- 운영유형 : 민간위탁운영
- 시설유형 : 청소년수련시설
- 사업비 : 144,400천원(군비 144,400)
- 시설규모 : 수용인원 : 131명, 건물/부지 : 지상4층/1,013m²

구분	면적 m ²	교실수	구 성 내 용	비고
1층	269	4	어린이도서관, 인터넷부스, 보드 카페, 사무실	
2층	260	6	멀티미디어실 3개, 다목적 홀, 댄스연습실, 북 카페	
3층	244	5	동아리실 2개, 프로그램실 2개, 세미나실	
4층	130	2	밴드연습실, 탁구장	
옥외	22	3	농구장, 창고, 야외테라스	

□ **이용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84,367	35,804	31,848	29,126	44,164	43,425
프로그램 참여	173,762	35,804	31,848	27,933	38,930	39,247
어린이 도서관	10,605	-	-	1,193	5,234	4,178
비고	- 어린이도서관 2013년 2개월 운영 - 2013, 2014 : 세월호사건, 메르스 발생 - 최근 2년간 일 평균 이용자 : 120명					

□ **민간위탁 운영 성과**

- 2003년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선정
- 2012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우수운영기관” 선정
- 2012년 여성가족부 최우수프로그램 “장관상” 수상
- 201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우수” 수상
- 2014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우수위원회” 선정
- 2015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최우수” 선정

□ **추진절차**

- 공개모집 공고 :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선정 : 11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12월

□ **추진계획**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년
-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위탁사무 및 조건
 -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관련법규 준수 의무
 - 위탁기간 : 2017. 1. 1 ~ 2020. 12. 31일까지 4년간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수탁기관 신청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위원구성 : 6 ~ 9명
 - 위원선정 : 관련공무원, 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협약체결 : 수탁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향후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모집공고(공개모집)	2016. 11월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2016. 11월	
협약체결/ 공증	2016. 12월	
수탁자 운영	2017. 1월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수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2016. 10.



위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 토지 및 건물 목록

◦ 토지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1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m ²)	비 고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1	대지	1,013	
계		1,013	

◦ 건물 : 시설규모 : 1,013m²(306평) / 연면적 - 928m²(281평)

동별	층별	용도	건축연월일	면적
1동	1층	인터넷부스, 보드카페, 안내데스크, 글벗나래도서관, 사무실	2001	269m ²
	2층	다목적 홀, 공연연습실, 북 카페, 멀티미디어방1,2,3	2001	260m ²
	3층	세미나실, 프로그램실1,2, 동아리방1,2	2001	244m ²
	4층	밴드연습실, 탁구장	2005.10	130m ²
외부	창고		2001	22m ²
	농구장		2001	

관 련 법 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위탁운영)

-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